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주 의
2. 경 고
3. 경고문 게재결정
4. 기 각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1. 중앙일간신문
2. 지방일간신문
3. 시사주간신문, 지역주간신문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1. 기사내용
2. 제 목
3. 사 진
4. 여론조사
5. 상업광고
6. 칼 럼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와 피해자(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 보도청구로 나누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자체심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실무팀에서 대상매체(일간신문 95개, 지역주간신문 326개, 시사주간신문 31개, 시사월간지 6개, 통신 2개 등 460개)의 선거 관련 기사내용을 분석한 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등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내 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 자체심의 안건 79건을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 불문처리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 주의나 경고 또는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위반 69건 중 주의는 11건, 경고 53건, 경고문 게재결정 5건이었는데, 경고가 가장 많아 76.8%를 차지했다. 경고문 게재결정은 경고결정보다 높은 제재조치로서 이번 총선거사 심의에서 처음 도입된 새로운 결정 유형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의결결과 2000년 16대 총선 때의 위반 기사 93건(주의 35건, 경고 58건)보다 적은 69건으로 줄어든 것은 언론사들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

주의나 경고 또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은 69건의 기사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 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41건(59.4%)
- ② 칼럼게재 제한 위반 21건(30.4%)
- ③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위반 4건(5.8%)
- ④ 상업광고 제한 위반 3건(4.3%)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위반현황을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6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주의 1건, 경고 3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주의),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건(경고)이었다. 반면 지방일간신문은 41건으로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9건(경고 16건, 경고문 게재결정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6건(주의 2건, 경고 13건, 경고문 게재결정 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3건(주의), 상업광고 제한 위반 3건(경고 2건, 경고문 게재결정 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시사주간신문은 11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0건(주의 2건, 경고 8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건(경고)이었고, 지역주간신문은 11건으로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2건, 경고 9건)이었다. 시사월간지와 통신은 위반 사례가 없었다.

위반유형별 결정내용을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사 7건에 대해서는 주의결정을,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 33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1건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후보자의 칼럼은 특정 후보가 일간신문·시사주간신문을 통해 자신의 견해가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후보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한 18건에 대해서 경고결정을 내렸고, 반복적으로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한 3건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보도하지 않은 기사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결정을 내렸으며, 상업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기사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경고, 1건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자체심의 외에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사과문게재 등을 요청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9건이었는데, 일간신문이 중앙지 6건, 지방지 1건으로 7건이었고 지역주간신문이 2건이었다. 시정요구는 16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보다 늘어났다.

시정요구 심의결과 경고 1건, 기각 3건 결정을 내렸으며 5건은 취하되었다. 취하된 5건은 해당 언론사가 정정 내지는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를 약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반론보도청구건은 없었다.

1. 주 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69건의 기사 중 15.9%인 11건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주의결정이 경고보다 적은 것은 4년 전인 16대 총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추세였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2건, 지방일간신문 5건,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이 각 2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11건의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7건(64%)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기사가 4건(36%)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위반 기사의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 참조>

특정 후보 및 특정 정당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주의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결정을 받은 중앙일간신문은 7건 중 1건에 불과했으나 지방일간신문·시사주간신문·지역주간신문이 각 2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들의 내용은 대부분 선거일 이전에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강

도가 비교적 약한 것이었는데, 지방의 일간·주간 신문의 경우 '2파전 압축' 이나 '양자대결 구도', '특정후보 독주예상' 등으로 기사를 다루었다. 스포츠투데이는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기발한 선거운동을 소개했으며, 오마이뉴스와 뉴스포럼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을 주도한 두 야당의 의원 5인은 정계를 떠나라'는 내용의 정치학자 칼럼을 보도하거나 인용보도해 타 정당 후보자들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결여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주 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1	수도권일보	2003. 12. 23.	2면	성남 분당갑 2파전 압축 ... 성대결 관심 고조
2004-자심-2	영남일보	2003. 12. 25.	5면	신영국-신국환 양자대결 구도
2004-자심-6	함평신문	2004. 1. 5.	8면	지금은 이낙연의원 독주
2004-자심-24	새거제	2004. 2. 14.~20.	5면	"거제는 김기춘 VS 김현철 빅매치"
2004-자심-61	오마이뉴스	2004. 3. 18.~24.	6면	그대들의 잔치는 3일을 넘지 못했다.
2004-자심-62	뉴스포럼	2004. 3. 18.~31.	1면	최병렬·홍사덕·조순형·유용태·박관용 '갑신오적'은 정계를 떠나라 !
2004-자심-76	스포츠투데이	2004. 4. 9.	28면	유종필 "계백장군 납시오"

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2 참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언론사의 기사 대부분이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 여론조사 결과보도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기본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4건이 주의결정을 받았는데 중앙일간신문 1건, 지방일간신문 3건이었다.

조선일보는 서울 48개 선거구 중 접전예상 20개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개 지역구에서 특정 정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범위 이내임을 전제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해 순위를 매기거나 우세하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주의결정을 내렸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에 의한 주의결정은 16대 총선때는 14건이었으나 이번에는 4건으로 줄었고, 중앙일간지의 경우 7건에서 1건으로 줄어든 것은 언론사들이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2〉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8	강원도민일보	2004. 1. 12, 16, 19, 26, 28, 30.	각 4면	부동층 40% ... 혼전 양상 부동층 50% ... 신뢰 확보가 당락 좌우 한나라 강세 ... 세대교체 역풍 미지수 부동층 65% ... 정당별 지지도 엇비슷 현역 선두 속 2強 후보 '맹추격' 선거구 통합때 지역대결 양상
2004-자심-69	충청일보	2004. 3. 31.	5면	차세대 리더 “鄭의장” 여론조사 36% 1위
2004-자심-70	경남신문	2004. 4. 1.	1, 3면	한나라 3, 우리당 4곳 우세
2004-자심-71	조선일보	2004. 3. 22.	1면	열린우리당 17곳 한나라 3곳 우세

2. 경 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69건 기사 중 76.8%인 53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16대 총선 당시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93건 기사 중 62.4%인 58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건수는 조금 줄었으나 비율은 늘어났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4건(7.6%), 지방일간신문 31건(58.5%),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이 각 9건(17.0%)이었다.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전체 위반기사 6건 중 경고결정이 4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칼럼 게재 제한 위반이 1건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은 전체 위반기사 41건 중 31건이나 경고결정을 받았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13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1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앙이나 지방 구분없이 일간신문은 모두 주의보다 경고결정이 많았는데, 결정 중에서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일간신문(75.6%)이 중앙일간신문(66.7%)보다 더 많았다.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도 주의·경고결정 중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 81.8%로 주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은 각 11건의 위반기사 중 9건이 각 경고결정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때문이었다.

17대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투표하는 1인 2표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종전과는 달리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선거보도 행태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 근거를 둔 지방신문들은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후보자나 특정 정당들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 보도 자체심의에서 지난 16대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신문이 경고를 많이 받았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①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3건(62.3%)으로 가장 많고 ②칼럼게재의 제한 위반이 18건(34.0%) ③상업광고의 제한 위반이 2건(3.8%)이었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참조>

- 1) 선거 초반부터 특정 후보예정자가 선두라고 보도한 경우
- 2) 선거 초반부터 양자대결 구도로 보도하여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한 경우
- 3)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견해를 보도한 경우
- 4)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만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경우
- 5)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단독 기자회견·출마의 변 등을 통해 포부·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거나 경쟁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 6) 시민단체의 낙천대상 명단에 오른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공천부적격 사유에 대한 해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경우
- 7) 특정 후보자 2인을 특정 광역시의 간판주자로 부각시킨 경우
- 8) 출마 예정자의 저서 관련 기사를 연속 보도한 경우
- 9) 후보의 공약을 보도하며 1~2인의 인물사진만 게재하고 경쟁후보들의 사진을 누락시킨 경우
- 10) 특정 정당대표의 선거지원유세를 보도하면서 부각성 제목을 단 경우

〈경 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3	무등일보	2003. 12. 19, 22, 24, 26.	각 5면	“이정일의원 대항마 관심” 등
2004-자심-5	전북도민일보	2004. 1. 9, 10, 12.	3면 8면 4면	‘칼의 힘, 펜의 힘’ 내일 출판기념회 펜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오홍근 민주 홍보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2004-자심-7	목포투데이	2004. 1. 7.	11면	“우리들 가슴에 꿈은 비수, 표로 심판”
2004-자심-11	뉴스포럼	2003. 12.18.~31. 2004. 1. 8.~21.	각 7, 8면	“정정당당하게 구태정치 깰 터” 등
2004-자심-14	뉴스포럼	2004. 2. 5.~18.	각 7, 8면	“반개혁 심판 386선발대” 등
2004-자심-15	시민일보	2004. 1. 29.	10면	“국민이 새인물 뽑아야 할 때”
2004-자심-16	시민일보	2004. 2. 5.	10면	“소외계층 아픔 살피겠다”
2004-자심-18	주간저널	2004. 2. 10.	24~26면	‘성실’ 그리고 김해시민에 대한 의리
2004-자심-19	경기신문	2004. 2. 13.	3면	“수원발전위해 출마”
2004-자심-20	아세아일보	2004. 2. 13.	2면	“100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다”
2004-자심-23	조선일보	2004. 2. 13.	12면	경남 총선 ‘빅매치 대결’ 관심 끈다
2004-자심-32	주간저널	2004. 2. 20.	18~20면	“새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2004-자심-35	주간현대	2004. 2. 29.	54면 55면	안산의 링컨-노영철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
2004-자심-39	스포츠투데이	2004. 2. 28.	26면	노웅래 “카메라출동 GO!”
2004-자심-43	오마이뉴스	2004. 2. 19.~25.	15면	김옥두에 도전장 낸 ‘DJ의 입’
2004-자심-44	시민일보	2004. 2. 18, 23, 26.	각 14면	“무소속 옥중출마 불사하겠다” “총선연대 낙천대상 신중 기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 당 공천은 무겁게 받아들여”
2004-자심-45	함양군민신문	2004. 2. 9.	3면	생활정치 가치, 개혁바람의 주역 “희망의 정치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2004-자심-46	충청리뷰	2004. 2. 28.	1면 9면	“승부는 이제부터!” 홍재형 윤의권 “이제부터 시작하자”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47	강서양천신문	2004. 3. 1.	4면	信念으로 택한 길 총선승리로 보답
2004-자심-50	스포츠투데이	2004. 3. 8.	26면	아침형인간 여의도 새벽 연다
2004-자심-53	주간저널	2004. 3. 8.	24~26면	성공적인 지방자치 행정경험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2004-자심-63	경기신문	2004. 3. 22.	3면	"남동공단 리모델링 추진"
2004-자심-64	호남매일	2004. 3. 22.	3면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돼야"
2004-자심-65	전국매일	2004. 3. 24.	4면	경기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김석균 후보
2004-자심-66	전국매일	2004. 3. 26.	4면	지역경제 살리기 혼신의 노력 다 할터
2004-자심-68	광주내일신문	2004. 3. 13.	3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한 정치 하고싶다"
2004-자심-72	주간 해진신문	2004. 3. 31.~ 4. 6.	1~3면	"새천년민주당 이정일 후보 '탄핵사과·주요현안...' 등
2004-자심-73	여수로신문	2004. 4. 1.	1·8면	큰 등대가 되겠다는 김재출 후보(무소속)
2004-자심-74	매일신문	2004. 4. 5.	4면	대구간판 '西 재섭-東 강철'
2004-자심-75	시사저널	2004. 4. 15.	32~33면	"재신임과 총선 연계는 무의미"
2004-자심-77	시민일보	2004. 4. 9.	4면	후보자 주변 썰렁...얼굴 알리기 바빠
2004-자심-78	황강신문	2004. 4. 6.	3면	장날찾아 거리유세, 적임자 강조 지지호소
2004-자심-79	경남여성신문	2004. 4. 15.	1면	장하다! "육영수 여사의 딸" 박근혜

나.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4 참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잘 지켰으나 부산일보와 시대일보가 이를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는 광고금지 기간인 2004년 1월 17일자 3면에 부산 수영지역구에서 한나

라당 공천신청을 낸 여의사의 개인경력 광고를 게재했으며, 서울에서 발행되는 시대일보도 1월 28일자 8면에 『박영선 인터뷰 사람 향기』라는 열린우리당 후보예정자의 저서 광고를 게재했다.

〈경 고〉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4〉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9	부산일보	2004. 1. 17.	3면	한국 무궁화회 총재 김정희
2004-자심-12	시대일보	2004. 1. 28.	8면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

다.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5 참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의 칼럼 게재시에는 보통 경고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번 총선에서 제재를 받은 새로운 유형이다.

칼럼게재 제한은 상업광고의 제한과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필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내용의 공정 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정 칼럼란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칼럼게재 제한으로 경고결정을 받은 경우로 중앙일간신문은 단 1건이었으나 지방일간신문은 16건이나 차지했으며, 시사주간신문은 1건이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지방일간신문은 전민일보로 7건이었고, 전북중앙신문과 시민일보가 각 2건으로 나타났다.

〈경 고〉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5〉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10	전북도민일보	2004. 1. 26.	11면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
2004-자심-13	호남일보	2004. 1. 20.	5면	“참여하는 국민이 새해의 희망”
2004-자심-21	월요신문	2004. 2. 22	5면	민의 귀 달고 야합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25	매일신문	2004. 2. 18.	7면	석패율제도와 대구시민
2004-자심-26	전북중앙신문	2004. 2. 20.	8면	남북정상회담 보고싶다
2004-자심-29	전민일보	2004. 2. 24.	5면	전통을 살리는 대규모 문화적 상상력
2004-자심-37	전민일보	2004. 2. 26.	5면	전북은 개혁의 텃밭
2004-자심-41	전민일보	2004. 3. 3.	5면	전주·전북 중심시대 준비해야
2004-자심-49	전민일보	2004. 3. 4.	10면	그대에게 다가서고 싶다
2004-자심-51	시민일보	2004. 3. 9.	5면	아! 안희정
2004-자심-52	강원일보	2004. 3. 6.	7면	폐광지역 도약의 새 전기
2004-자심-54	전민일보	2004. 3. 9.	10면	청산되어야 할 패거리문화
2004-자심-55	전민일보	2004. 3. 10.	10면	전북을 신산업 물류중심지로
2004-자심-56	전민일보	2004. 3. 11.	10면	물, 정치 그리고 희망
2004-자심-57	서울경제	2004. 3. 12.	6면	성폭력 종합지원센터 질실
2004-자심-58	전북중앙신문	2004. 3. 12.	8면	국가발전과 출산율
2004-자심-59	전북일보	2004. 3. 16.	6면	대통령탄핵은 신종쿠데타
2004-자심-60	시민일보	2004. 3. 18.	5면	내가 겪은 3·12 쿠데타의 현장

이 밖에 시정요구심의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연수저널에 대해 1건의 경고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노인센터 건립이 구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공약사항과 연관된 활동을 보도한 것, 후보자 합동토론회 기사에서 특정 후보가 발표한 국립 예술의 전당 조감도까지 게재한 것은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3. 경고문 게재결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 이번 총선 때 처음으로 ‘경고문’을 게재토록 했다. 자체심의에 대한 결정유형으로는 선거법상 사과문, 정정보도문만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과문은 1991년 현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정정보도문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 규칙에 의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주의·경고 결정만 내렸었다.

하지만 주의·경고 결정은 그 자체로 끝날 뿐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것으로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비록 ‘경고문’이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선거법상 명문화돼 있는 ‘사과문’보다 제재수위가 낮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고문 게재’ 결정은 불공정한 기사에 대한 시정 요구에 있어서도 적절한 결정유형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은 언론사가 해당 문제 기사의 보도날짜, 제목, 불공정사유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6 참조>

<경고문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6>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31	서울일보	2004. 2. 23, 24.	각 7면	'국민의 선택과 변화' 한국정치현실·民意소재

나.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7 참조>

<경고문 게재>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7>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30	서울일보	2004. 2. 23, 24, 25, 26, 27. 3. 2.	7면(2. 23.) 그 외는 각 11면	국민의 선택과 변화

다.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8 참조>

<경고문 게재>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8>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28	전북도민일보	2004. 2. 18.	11면	국약의 선택-전술적 잣대를 경계한다
2004-자심-33	전북도민일보	2004. 2. 26.	11면	지역인재풀시스템이 필요하다
2004-자심-34	전북도민일보	2004. 2. 27.	11면	여성의 정치참여없이 정치개혁 없다

경고문 게재결정 5건은 모두 2개 지방일간신문에 대해 내려졌는데, 전북도민일보가 3건, 서울일보가 2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3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1건이었다.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3일에 걸쳐 각각 다른 후보예정자 3인의 칼럼을 연속 게재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서울일보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서를 광고금지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6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광고하고, 같은 후보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홍보성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경력 등을 이를 연속 게재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4. 기 각

9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3건이었다. 문화일보가 『재산증식 의혹-전과기록 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서대문갑구 한나라당 후보자의 아내 명의 건물 2채에 대해 재산증식 논란이 있으며 경쟁 상대인 열린우리당 후보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공방이 있다며 이에 대한 두 후보자의 해명을 보도하자, 한나라당 후보가 건물 2채는 12년전 과도한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융자받아 지은 것으로 재산증식에 전혀 의혹이 없고 자신과 대비해 열린우리당 후보의 전과기록 공방이 민주화투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부각 보도했다고 주장, 경고조치와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에서 구체적인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경쟁 상대후보의 민주화투쟁으로 인한 전과기록이 반드시 그에게 유리한 보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각했다.

또한 부산일보의 『부산 금정구 시민 이슈 토론회』 기사 중 부산 금정구 자민련 후보자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자신이 부유세 도입을 제일 먼저 주장 했는데도 마치 한나라당 후보자가 한 것처럼 기사화 했으며, 자신이 부산항에 관해 발표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언론사에 이미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어 시정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졌고, 언론사의 당해 기사 중의 토론 내용 요약표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적시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의사표현이 무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요약표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부산항에 관한 발표를 게재했으므로 전혀 기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남 양산 민노당 후보자가 신청한 지역주간신문인 양산신문의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도 기각되었다. 민노당 후보자는 양산신문이 『입후보자 지상토론』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객관적 기준 없이 자신을 제외한 채 토론회를 개최해 보도한 것과, 다른 날 『총선후보 유세현장 이모저모』 제하의 기사에서 8명 후보 중 자신을 제외한 7명 후보의 유세동향만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문 등의 제재조치와 함께 다른 후보자들과 같은 크기의 기사내용을 동일 지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양산신문이 토론회에 참석할 인물을 선정함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준용하여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후보 3명, 직전 선거인 16대 총선 출마자 중 득표율이 5%가 넘는 2명, KBS 여론조사 결과·부산일보·경남신문 보도를 참고로 해 인물 적합도를 감안한 후보 1명 등 총 6명의 후보를 토론회 참석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양산신문이 시정요구인에게 유세활동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내라고 전화통보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아 시정요구인의 유세동향이 보도되지 않았다고 양산신문이 밝혀 왔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총 460개로 일간신문 95개(중앙지 28개, 지방지 67개), 시사주간신문 31개, 지역주간신문 326개, 시사월간지 6개, 통신 2개였다.

이 중 중앙일간신문 3개, 지방일간신문 21개, 시사주간신문 6개, 지역주간신문 11개 등 모두 41개 매체가 선거기사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주의·경고·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매체 비율은 8.9%로 16대 총선 때의 17.5% 보다 감소하였다.

중앙일간신문은 심의대상 28개 매체 중 3개가 지적돼 10.7%의 비율을 보였는데, 3개 신문이 6건을 위반해 주의 2건, 경고 4건의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와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각 1건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은 심의대상 67개 매체 중 21개가 지적돼 31.3%의 비율로 위반, 21개 신문이 41건을 지적받아 주의 5건, 경고 31건, 경고문 게재 5건의 결정을 받았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6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와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31개 매체 중 6개가 지적돼 19.4%의 비율로 위반한 시사주간신문은 6개 신문이 11건을 지적받아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을 받았는데 칼럼게재 제한 위반 1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다.

지역주간신문은 326개 매체 중 11개가 지적돼 3.4%의 비율로 위반, 11개 신문이 1건씩 모두 11건을 지적받아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11건 모두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 <표 9·10 참조>

간행형태별 위반현황

<표 9>

간 별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제한	칼럼게재제한	경고문 게재결정	경 고	주 의
일간 신문	중앙	6	4	1			1		4	2
	지방	41	16	3		3	19	5	31	5
시사주간신문		11	10				1		9	2
지역주간신문		11	11						9	2
총 계		69 100.0%	41 59.4%	4 5.8%		3 4.3%	21 30.4%	5 7.2%	53 76.8%	11 15.9%

매체별 위반현황

〈표 10〉

간 별	매체명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 정 성 및 형 평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제한	칼럼게재제한	경고문 게재결정	경 고	주 의
중앙 일간 신문	조 선 일 보	2	1	1					1	1
	서 울 경 제	1					1		1	
	스포츠투데이	3	3						2	1
	소 계	6	4	1			1		4	2
지 방 일 간 신 문	강원도민일보	1		1						1
	강 원 일 보	1					1		1	
	경 기 신 문	2	2						2	
	경 남 신 문	1		1						1
	매 일 신 문	2	1				1		2	
	무 등 일 보	1	1						1	
	부 산 일 보	1				1			1	
	서 울 일 보	2	1			1		2		
	수도권일보	1	1							1
	시 대 일 보	1				1			1	
	시 민 일 보	6	4				2		6	
	아 세 아 일 보	1	1						1	
	영 남 일 보	1	1							1
	전 국 매 일	2	2						2	
	전 민 일 보	7					7		7	
	전북도민일보	5	1				4	3	2	
	전 북 일 보	1					1		1	
	전북중앙신문	2					2		2	
	충 청 일 보	1		1						1
	호 남 매 일	1	1						1	
	호 남 일 보	1					1		1	
	소 계	41	16	3		3	19	5	31	5
시 사 주 간 신 문	뉴 스 포 럼	3	3						2	1
	시 사 저 널	1	1						1	
	오 마 이 뉴스	2	2						1	1
	월 요 신 문	1					1		1	
	주 간 저 널	3	3						3	
	주 간 현 대	1	1						1	
	소 계	11	10				1		9	2
지역 주간 신문	강서양천신문	1	1						1	
	경남여성신문	1	1						1	

간 별	매체명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제한	칼럼게재제한	경고문 게재결정	경 고	주 의
지 역 주 간 신 문	광주내일신문	1	1						1	
	목포투데이	1	1						1	
	새거제	1	1							1
	여수로신문	1	1						1	
	주간해진신문	1	1						1	
	충청리뷰	1	1						1	
	함양군민신문	1	1						1	
	함평신문	1	1							1
	항강신문	1	1						1	
	소 계	11	11						9	2
	총 계	69 100.0%	41 59.4%	4 5.8%		3 4.3%	21 30.4%	5 7.2%	53 76.8%	11 15.9%

1. 중앙일간신문

중앙일간신문은 스포츠지 1개, 경제지 1개를 포함해 3개 매체가 공정성 및 형평성과 관련해 4건을 위반, 3분의 2(66.6%)가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건은 각각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지적됐다.

스포츠투데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과 관련해 3건의 지적을 받았고, 조선일보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각 1건씩 지적됐다. 서울경제는 칼럼게재 제한 위반 1건이 지적됐다.

스포츠투데이는 2월 28일자 26면에서 서울 마포갑 후보예정자인 열린우리당 노웅래 전 MBC 9시뉴스 카메라출동 팀장의 이색 경력과 정치적 포부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또 3월 8일자 26면에서 서울 동작을 후보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의 정치입문 동기 및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했는데, 당시 베스트셀러 처세서적을 연상시키는 『아침형 인간 여의도 새벽 연다』는 제목을 달아 사원 시절부터 새벽 6시에 출근한 아침형 인간의 원조격이라고 추켜세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 신문이 4월 9일자 28면에서 민주당 후보 6인의 기발한 선거운동 사례를 보도한 것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지적을 받았지만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 후보들로서 서울 관악을 유종필 후보가 갑옷을 입은 계백장군 모습으로 유세에 나서는 등 장금이를 비롯한 인기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2월 13일자 신문에서 경남 창원갑, 창원을, 남해·하동, 통영·고성, 거제 등 5개 선거구별 유력 후보예정자 2인의 경력과 최근 행적을 밝히면서 선거가 그들만의 경쟁으로 치러지는 양 추측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지적돼 경고결정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또 3월 22일자 1면 『서울 접전 예상 20곳 판세-열린우리당 17곳, 한나라 3곳 우세』 제하의 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이 17개 지역구에서(오차범위 내는 6개 지역구), 한나라당이 3개 지역구에서(오차범위 내는 3개 지역구) 우세하다고 보도했는데,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범위 이내임을 전제 하더라도 순위를 매기거나 우세하다는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오도할 우려가 있어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를 등을 밝혔으나 “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 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된 것이다.

서울경제는 칼럼게재 제한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3월 12일자 오피니언란에 『성폭력 종합지원센터 절실』이란 제목으로 서울 영등포를 민주당 후보예정자인 박금자 의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의사 출신의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예방책을 제시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 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2. 지방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은 21개 매체에서 모두 41건을 위반했는데, 그 중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9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그 다음인 16건(39.0%),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와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3건(7.3%)을 차지했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의 경우 중앙일간신문이 1건(16.7%)인데 비해 지방일간신문은 19건(45.3%)이나 되어 대조적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방일간신문에 내린 결정은 경고 31건(75.6%), 주의와 경고문 게재결정이 각 5건(각 12.2%)이었다.

가장 많이 지적받은 신문은 전민일보로 모두 7건이 칼럼게재 제한 위반으로 지적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의 공약과 포부를 내용으로 하는 칼럼을 필자의 주요 경력과 함께 고정칼럼란에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 결국 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7건 모두 경고결정을 받았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받은 시민일보는 총 6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2건이었다. 전북도민일보는 위반 5건 중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4건이었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총 19건 중 전북 전주에 있는 4개 지역일간신문이 14건을 차지했다.

지방일간신문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사례는 주로 특정 후보예정자를 유리하게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지방일간신문들의 지역별 위반건수를 보면 인천·경기지역과 전북지역이 각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와 대구·경북지역이 각 3건, 강원지역이 2건, 충북, 경남, 부산지역이 각 1건이었다. 대전·충남, 전남, 울산, 제주지역은 1건도 없었다. <도표 1 참조>

지방일간신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등일보는 선거일 3개월 전에 전남 함평·영광 선거구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초선인 이낙연 의원이 당내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 의원의 독주가 예상된다고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도민일보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서 출간과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 3일에 걸쳐 집중보도,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릴레이 인터뷰'라는 표기하에 최근 1개월 동안 두 지역구에서 단 두 후보예정자만 다루면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두 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을 각각 지나치게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또 총선연대의 낙천대상 명단에 오른 후보예정자 중 특정 후보예정자 3인만의 공천 부적격사유에 대한 해명을 얼굴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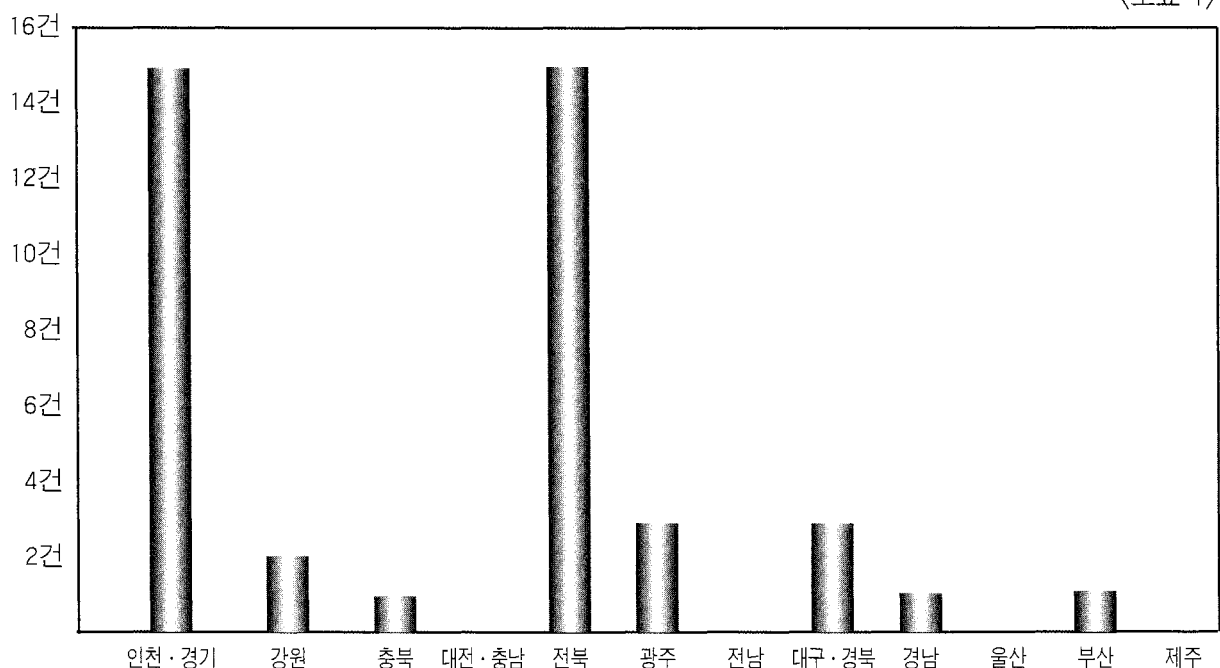
서울일보는 경기도 평택갑 후보예정자인 모 대학교수의 저서를 그의 인물사진·경력 등과 함께 광고 금지기간에 6일 연속 광고하고, 그 저서에 대한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경력 등을 이틀 연속 보도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경기신문은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인천 남동을 지역구의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과 공약사항을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매일신문은 특정 후보자 2인을 대구지역 '간판주자'로 부각시키면서,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의 경우 '정권실세'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도, 여타 후보자들에

지방일간신문의 지역별 위반건수

<도표 1>



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수도권일보는 선거일 3개월 전에 성남 분당갑의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3. 시사주간신문, 지역주간신문

시사주간신문은 31개 매체 중 6개 매체가 11건을 지적받았는데, 1건의 칼럼게재 제한 위반을 제외한 10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으며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주간저널은 세 특정 후보예정자의 경력·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3면에 걸쳐 세 차례나 지나치게 부각 보도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사주간신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간현대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경력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안산의 링컨,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 등 찬사일변도의 내용을 양면에 걸쳐 5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오마이뉴스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을 주도한 최병렬·홍사덕·조순형·유용태·박관용 등 갑신오적 5인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는 정대화 칼럼을 보도,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어 타 정당후보들과의 공정성 결여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신문의 경우 326개 매체 중 11개 매체가 1건씩 모두 11건을 지적받았는데, 모두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고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반내용은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그의 정견·경력·인물사진 등을 게재한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특정 지역구에서의 양강 구도 압축 보도였다. 그 밖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독주 예상보도, 특정 후보예정자만의 공약에 대한 상세 보도, 특정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견해 보도, 특정 정당대표의 선거유세활동에 대한 부각성 제목의 보도 등으로 각각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지적됐다.

지역주간신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서양천신문은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경력과 정견, 인물사진 등을 부각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충청리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천자들의 양강구도가 확실히 이뤄졌다면 선거판세를 두 후보 위주로 분석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여수로신문은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 및 활동상황을 촛불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제재조치를 내린 대상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시킨 제목·내용·사진 등과 여론조사의 요건을 미비한 기사 그리고 선거일전 90일부터 게재되는 후보자의 칼럼이었다.

그 중 기사내용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후보자의 칼럼게재 21건, 제목 5건, 여론조사관련 4건, 상업광고 3건, 사진 2건의 순이었다. 기사내용을 위반 유형별로 세분하면 인물부각이 20건, 인터뷰가 10건, 판세분석이 4건이었다.

제재결정된 기사와 칼럼 등은 크게 보아 특정 후보예정자와 후보자를 부각시키거나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보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주의·경고 및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린 대상들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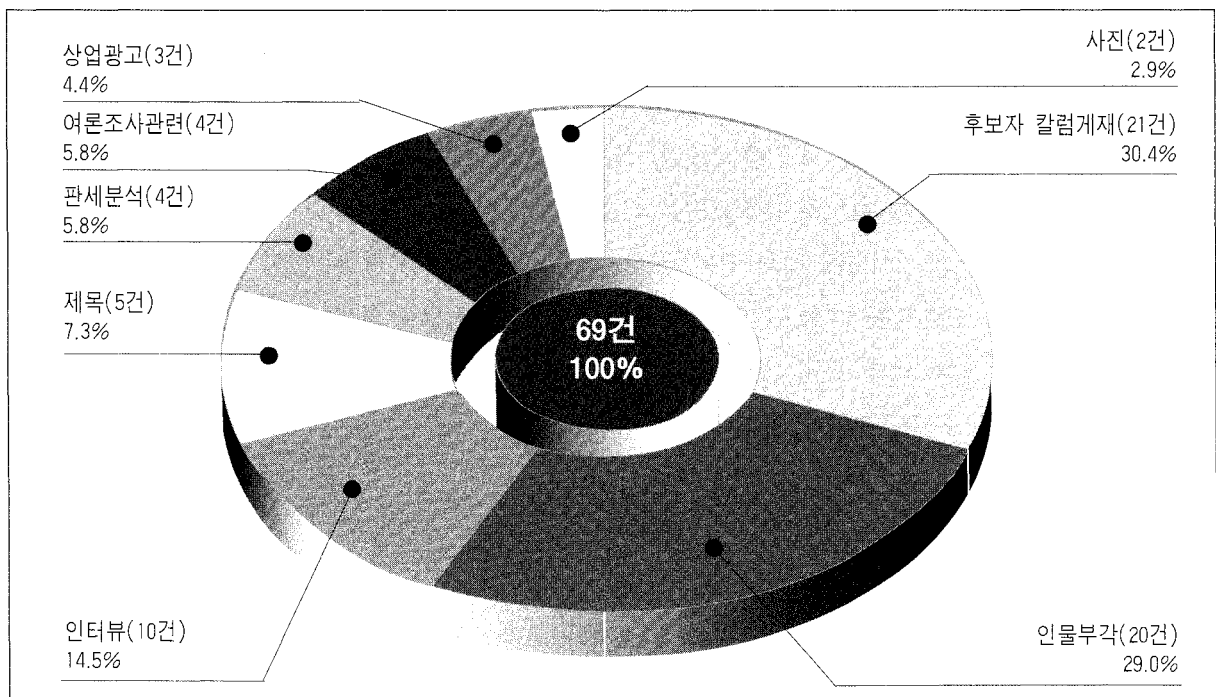
1. 기사내용

가. 인물부각

선거기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자에 관한 기사 내

위반 유형별 분포도

<도표 2>



용이다. 언론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인물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면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나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지적을 받았다. 언론사가 특정 인물에 대해 같은 날짜 2~3개면에 걸쳐 보도하는가 하면 연속 2~3일에 걸쳐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 사례는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스포츠투데이가 유일했고, 대부분 지방일간신문·시사주간신문·지역주간신문에서 지적됐다.

인물부각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투데이는 서울 마포갑 후보예정자인 노웅래 전 MBC 9시뉴스 카메라출동 팀장의 이색경력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소개하고, 또 서울 동작을에서 출마할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을 아침형 인간의 원조격이라 추켜세우면서 그의 정치 포부를 부각시켜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에서 출마할 오홍근 민주당 홍보위원장의 저서 『칼의 힘, 팬의 힘』 관련 기사를 인물 사진과 함께 연3일(1월 9, 10, 12일)에 걸쳐 집중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출판기념회에는 중앙당 간부들과 출입기자들이 대거 참석, 그의 당내 입지를 실감케 했다고 저서 내용과 저자의 경력도 게재하였다.

서울일보는 경기 평택갑 후보예정자인 김성수 한양대 교수의 저서 『국민의 선택과 변화』에 대한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 경력 등을 2월 23일, 24일 이틀 연속 게재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주간저널은 2월 10일자에 경남 김해 지역구 후보예정자들을 거론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예정자인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의 경력, 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3면에 걸쳐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데 이어, 2월 20일자, 3월 8일자에도 경남 밀양·창녕과 창원갑 지역구의 한나라당 후보예정자 정용해 변호사, 열린우리당 후보예정자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경력, 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역시 3면에 걸쳐 각각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주간현대는 2월 29일자 '인물탐구'란에 『안산의 링컨 노영철,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라는 제목 하에 경기 안산 지역구 후보예정자인 노영철 안산시 중소기업발전연구소장의 경력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미주한인총대학생연합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 선봉', '국제적 감각과 전문 경영능력의 소유자',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 '안산 발전을 견인할 최적의 인물' 등과 같은 찬사 일변도의 내용을 양면에 걸쳐 5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사저널은 4월 15일자 2개면에 걸쳐 강원 태백·정선·영월·평창 열린우리당 이광재 후보(전 국정상황실장)의 정견과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주간 해진신문은 전남 해남·진도 민주당 이정일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4월 6일자 3개면에 걸쳐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나. 인터뷰

정당 공천을 전후해 매체들은 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곤 한다. 인터뷰 기사 중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지적된 경우는 중앙일간신

문은 한 건도 없었고 모두가 지방의 일간신문 혹은 주간신문이거나 시사주간신문이었다.

위반사례를 보면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릴레이 인터뷰·인터뷰 시리즈로 예고해 놓고도 특정 인물 1~2인의 인터뷰 기사만 게재해 다른 후보들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 지방일간신문은 경기신문, 호남매일, 전국매일 등이었고, 시사주간신문은 시사저널, 지역주간신문은 광주내일신문이었다.

인터뷰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민일보는 '릴레이 인터뷰'란 표기 하에 1월 29일과 2월 5일 사이에 특별한 계기도 없이 2개 지역구에서 단 두 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해 지적을 받았으며, 함양군민신문은 '선택 2004-함양·거창지역 총선 주자들①'이라는 인터뷰 시리즈 기사 게재를 밝히면서도 정작 특정 후보예정자 1인만의 출마변과 경력, 얼굴사진 등을 부각 보도한 경우였다.

뉴스포럼은 2003년 12월 18일~2004년 2월 18일 사이의 인터뷰 기사에서 다른 후보예정자 30명 중 26명이 열린우리당 인물이어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자신들이 정한 일정 절차(출마 오디션)를 거친 후 자체 기준에 부합한 후보예정자들에 한해 뉴스포럼에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각 정당과 유력 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정기준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특정인의 인터뷰가 결정된다는 것은 후보예정자들의 정책성향과 비전에 따라 기회의 차등을 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다. 판세분석

선거기사에서 판세분석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에 대한 판세보도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며 또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의 자체분석, 현지취재 등에 근거해 선거 판세분석 보도를 한다. 그러나 그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할 때 보도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판세분석 보도행태는 흔히 후보 우열 보도, 즉 누가 얼마나 앞서느냐 하는 경마식 보도로 나타나는 데, 2파전이니 양강구도니 하는 두 후보 위주로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 독주니 하며 한 후보를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후보 간 '우세·열세' 이외에 '경합·혼전·접전', 나아가 '박빙의 승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흥미 위주의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후보 우열 보도는 선택할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우세'한 후보를 찍게 하는 측면도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일간신문들은 여론조사 결과보도 금지기간(선거기간 개시일~투표일) 이전에는 물론이요, 금지기간에도 여론조사기관의 분석과 각 정당의 자체분석을 토대로 정당과 후보의 우열을 보도했다. 금지기간 전과 후의 보도행태가 다른 점은 금지기간 전에는 '%'로 지지도 숫자

까지 표시했으나 후에는 ‘우세·경합’ 등으로만 나타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언론사의 총선 판세보도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했다면 이는 선거법에 위반되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단순히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현지 분위기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판세분석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등일보는 각각 다른 날짜 보도에서 전남 4개 지역구의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두주자로 부각시켰다. 함평·영광에서는 “일단 이낙연 의원 독주”, 해남·진도에서는 “이정일 의원 대항마 관심”, 보성·화순에서는 “박주선 의원 누가 맞서나”, 무안·신안에서는 “민주 경선 한화갑 뿐”이라는 제목으로 한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언론사의 현지 취재에 의한 판세분석은 특정 지역의 민심에 근거한 보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민심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택시기사, 시민들이다. 1월 7일자 목포투데이는 목포지역에서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견해만을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균형있게 보도해야 한다고 심의기준은 규정하고 있다.

2. 제 목

아무리 선거기사라 해도 유권자들이 모든 기사를 다 읽는 것은 아니며 자기에게 관심있는 기사만 읽는다는 사실은 제목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다. 눈을 끄는 제목이면 읽게 되기 때문이다.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다 보니 기사 내용보다 과장·축소되거나 특정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편파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번 총선 기사 자체심의에서 제목이 공정성에 위반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16대 총선 때는 4건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이 3건, 지역주간신문이 2건인데, 수도권일보·영남일보·무등일보·함평신문·경남여성신문이 각각 1건씩이었다. 위반 제목은 특정 후보예정자 1인을 부각시키거나 2과전 압축 혹은 2자 대결자 이름을 명시하거나 특정 정당대표를 부각시킨 것 등이었다.

위반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일보의 경우 선거일을 3개월여나 앞둔 시점에서 『성남 분당 갑 2과전 압축』이란 제목을 달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영남일보도 같은 경우로서 선거일을 3개월이나 남겨놓고도 『문경·예천 신영국·신국환 양자대결구도』란 제목을 달았다. 무등일보도 선거일을 비슷하게 앞둔 시점에서 본문 내용과 함께 『함평·영광 일단 이낙연 의원 독주』란 제목을 달았는데, 앞의 두 신문보다 높은 경고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신문인 함평신문도 전남 함평·영광에서 초선인 이낙연 의원이 당내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어 현재로선 이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금은 이낙연 의원 독주』란 제목을 붙였다.

경남여성신문은 선거유세 활동을 벌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부각시킨 경우이다. 이 신문은 4월 15

일자에서 “박근혜 대표 체제 이후 첫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은 이날 대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한나라당의 아성임을 실감케 했다”면서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짙게 배여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박 대표에 대한 인기는 무척 높은 편이었다”고 보도했고, 『장하다! '육영수 여사의 딸' 박근혜』, 『숨죽이던 텃밭 깨우는 박 대표 대구 방문 '환대'』란 제목을 특히 부각시켜 경고결정을 받았다.

3. 사 진

사진의 불공정 사례는 같은 날짜 지면의 한 기사 속에서 여러 장 쓰는 방법, 한 기사 속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만 쓰거나 반대로 다른 경쟁 상대들의 사진은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의 사진만 빼버려 차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인터뷰 기사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여러 컷 게재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기사 심의에서 사진보도가 불공정 사례로 지적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나 일부 지방일간신문과 시사주간신문이 특정 후보의 사진을 크게 게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16대 총선 때 조치된 위반 사진은 11건이었다.

이번에 지적된 지방일간신문인 시민일보의 경우, 4월 9일자에서 서울 영등포갑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 민주당 김민석 후보, 열린우리당 김명섭 후보의 공약사항 등을 게재하면서 김명섭 후보의 사진을 누락시켜 경고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신문인 황강신문은 반대로 각 후보의 선거연설을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 한 사람의 사진만 게재한 사례다. 이 신문은 4월 6일자에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 각 후보들의 장날 거리유세 내용을 보도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 한 사람의 사진만 게재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4. 여론조사

대부분의 언론사는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나타난 조사결과를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몇 차례 보도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보도는 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보도시 필수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미비한 4건에 대해 모두 주의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1건, 지방일간신문 3건이었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에 의한 주의결정은 16대 총선 때는 14건이었으나 이번에는 4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보도 금지(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위반사례는 16대 총선 때는 7건이었으나 이번에는 한 건도 없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보도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을 기본요건으로 정해 심의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서울의 접전 예상 20개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3월 22일자에 보도하면서, 기본요건은 밝혔으나 열린우리당 6곳, 한나라당 3곳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고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범위 이내임을 전제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우세하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심의기준

제8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주의결정을 내렸다.

지방일간신문인 경남신문·충청일보·강원도민일보는 모두 여론조사보도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특히 3월 31일자 충청일보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 중 차세대 리더로서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 의장이 36.1%로 박 대표(21%)와 추 위원장(4.7%)을 압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조사지역만을 밝히고 나머지 공표준수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5. 상업광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상업광고는 지난 16대 총선 때는 단 1건이었으나 이번에는 3건으로 늘어나 경고 또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모두가 지방일간신문으로 부산일보·서울일보·시대일보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산일보는 1월 3일자 3면에 부산 수영 지역구에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낸 여의사 김정희 한국무궁화회 총재의 개인경력 광고를 5단으로 게재했으며, 시대일보도 1월 28일자 8면에 후보예정자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저서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를 광고했다.

특히 서울일보는 2월 23~27일, 3월 2일에 걸쳐 경기 평택 지역구 후보예정자인 김성수 한양대 교수의 저서 『국민의 선택과 변화-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을 인물사진·경력 등과 함께 연속 6회 광고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6. 칼 럼

칼럼게재 제한 위반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위반유형으로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다음으로 많은 21건이 지적됐다. 위반사례는 중앙일간신문인 서울경제 1건을 제외한 20건은 지방일간신문, 시사주간신문이 차지했으며, 3건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에 대해 21건 중 18건에 대해서 경고결정이 내려졌으며 3건은 경고결정을 받은 후 반복적으로 칼럼을 게재하여 경고문 게재결정이 내려졌다.

칼럼게재 형식을 보면 고정칼럼란에 게재된 후보예정자의 칼럼이 가장 많았고, 기고 3건, 제언 2건도 있었다. 칼럼의 내용은 대부분 후보예정자의 정책제시, 공약성 글이었는데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라 하더라도 선거시점에서는 다른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 칼럼의 내용이 선거와 전혀 무관한 소재라 하더라도, 후보예정자의 PR로 이용될 수 있기에 내용을 불문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편, 전민일보의 경우 칼럼 속에 필자인 후보예정자의 주요 경력을 상세히 게재하기도 했다.